

의안번호	2217291
의 퇴 인	김현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계번호	26B1344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	100	-	-	100	-	200	4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안전관리 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들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디지털 안전 관리 심의위원회)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의위원회(이하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24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관리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4항) 1.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우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경로의 확보 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전력공급장치 등 중요한 디지털 설비의 분산 및 다중화 다.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등 작업관리 및 정보시스템 접속·운영 이력 관리 라. 디지털 설비의 연계 운용 및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성 마.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리적·기술적 조치 2. 디지털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 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나. 디지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의 실시 다.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성 및 피해복구 물자 확보 등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조치 라.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이하 “이행 점검”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 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9조(원인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2.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8	안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디지털 설비, 디지털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응급 조치 및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22조(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는 디지털 재난의 수습 등과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봄(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23조(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디지털 설비와 다른 사업자의 디지털 설비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디지털 설비(이하 “자가 디지털 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 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자가 디지털 설비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 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함. 다만, 자가 디지털 설비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함(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25조(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26조(전문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7조(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의 구성·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등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8조(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5	안 제29조(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저케이블 보호 및 관리 2. 해저케이블 감시 설비, 선박 등의 지원 3. 해저케이블 관련 민·관·군 협의체 운영 4.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해저케이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해저케이블 운영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디지털 안전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7조(디지털 안전관리 심의 위원회)	—	• 미대상 — 제정안의 내용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	
4	안 제9조(관리계획의 수립)	—	
5	안 제10조(이행 및 점검)	—	
6	안 제22조(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	
7	안 제27조(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의 구성·운영)	—	
8	안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9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디지털 안전관리 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10	안 제19조(원인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재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원인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디지털 재난의 분야, 빈도, 규모 등의 예측 및 원인조사의 단가 등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재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디지털 재난의 분야, 빈도,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23조(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3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중 디지털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정안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관련 예산이 없고, 향후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 발생 시 재난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에 수반되는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25조(연구개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5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연구활동의 목적 및 세부과제 내용, 지원 단가, 지원물량 등 추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기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14	안 제26조(전문인력 양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6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의 세부 내용, 지원 단가, 지원물량 등 추계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기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5	안 제28조(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방송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을 기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제정안에 따라 현 시스템 확대 및 개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의 확대 및 개편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td><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td><td>1,895</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1,895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1,895							
16	안 제29조(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저케이블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해저케이블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td><td>해저인프라*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공공 관리기준 수립, 서해강조류악시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장비 기반 관리체계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해저인프라: 해저 송전선로, 해저 통신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등</td><td>1,6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	사업개요	2026	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해저인프라*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공공 관리기준 수립, 서해강조류악시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장비 기반 관리체계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해저인프라: 해저 송전선로, 해저 통신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등	1,600
사업	사업개요	2026							
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해저인프라*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공공 관리기준 수립, 서해강조류악시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장비 기반 관리체계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해저인프라: 해저 송전선로, 해저 통신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등	1,60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안 제7조(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7조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체한 것으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위원 확대 계획이 없으며 위원회 개최 빈도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사업	사업개요	2026
	통신재난관리운영지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8
주: 10명×4회×20만원 = 8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더라도, 현재 사업 용역기관 및 운영기관이 현행 디지털 안전 관련 3법¹⁾에 따른 기존 업무를 지속 수행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지원	2,2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1,89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안 제9조(관리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보호조치가 통합된 계획이므로, 현행 사업 예산 규모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td><td>－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td><td>1,329</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	1,329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	1,329								
안 제10조(이행 및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이행 점검이 통합된 점검이므로, 현행 사업 예산 규모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td><td>－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td><td>1,329</td></tr><tr><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td><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 디지털서비스장애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td><td>1,895</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	1,329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 디지털서비스장애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1,895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안정성 강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사업 등	1,329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 디지털서비스장애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1,895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안 제22조(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22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에서 이관된 조항으로 디지털 위기 대책 본부(현행 방송통신재난본부)의 운영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안 제27조(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의 구성·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27조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는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한 기간·부가·데이터센터 사업자 등 포함 실무 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며, 협의체의 기능·역할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th><th>2026</th></tr><tr><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td><td>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운영지원 －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정부와사업 자간 실무협의체 및 워크숍 개최 등 포함</td><td>1,329</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운영지원 －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정부와사업 자간 실무협의체 및 워크숍 개최 등 포함	1,329			
사업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운영지원 －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정부와사업 자간 실무협의체 및 워크숍 개최 등 포함	1,329								
안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32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은 안 제8조의 전담기관 등을 통해 수행될 예정으로, 사업 용역 기관 및 운영기관이 수행했던 현행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에 따른 기존 업무 지속 수행 예정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td><td>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지원</td><td>2,226</td></tr><tr><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td><td>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td><td>1,895</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지원	2,2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1,895
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운영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지원	2,2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1,89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기간 1차 및 4차 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억원으로 추계(연평균 4,000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2022년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 2022년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1억원으로 가정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중장기 계획	집행액
2022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150
2022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기본계획	90
2022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검색

[표 4]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00	—	—	100	—	200	4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현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소관 부처)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2026 예산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운영	- (목적)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및 통신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지원 - (주요내용)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데이터센터 보호지침 세부기준 개선 및 보호지침 이행점검,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지원, 민-관 합동 모의훈련 지원, 후속관리 및 제도개선 등	2,226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목적)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 (주요내용)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 방송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통신사업자 통신설비(8종설비) DB 구축, 디지털서비스 장애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스마트 안전점검 APP 통한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추진	1,895
	디지털재난관리 운영 지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 관련 운영 경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	24
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R&D) (해양수산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해상풍력 증가에 따른 해저인프라*의 안전하고 체계적관리를 위해,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공공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서해 강조류·약시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장비 기반 관리체계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해저인프라 : 해저 송전선로, 해저 통신케이블, 해저 파이프라인 등	1,6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